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 사례 중심 교육 강화로 신고 실효성 제고,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
- 배우 이윤지 참여로 학습 몰입도 향상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며,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라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 가장 중요한 안정망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2.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안내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팀 장	박광훈 (044-202-3315)
		담당자	사무관	안영도 (044-202-3301)
담당부서 <수행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	책임자	관 장	박정식 (02-6951-1790)
		담당자	팀 장	최지연 (02-6951-1793)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 신고의무자 직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2027. 5. 12 시행)

※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붙임]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참조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이수 가능 사이트 안내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과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 교육 이수 가능 대표 사이트

연번	사이트명	주소(URL)	비고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	
3	대전광역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https://nurim.dile.or.kr/	
4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https://sjlms.sri.re.kr/	
5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s://www.all.go.kr/	
6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7	교육부 중앙교육연구원	https://neti.go.kr/	
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https://welfarekorea.com/	
9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https://edu.kcpass.or.kr/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등 교육 사이트에서 이수 가능